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3
----------	-----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5년 3월 27일
-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2일
- 라. 상정결과 : 제2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6월 18일, 공청회 개최)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가. 제안이유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1항).
- (2) 한양도성의 상시점검 및 보수, 연구조사를 위한 한양도성 현장관리·연구조직 신설(안 제5조).
- (3) 서울특별시장은 한양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6조).
- (4)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의 유산가치와 주변지역의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둠(안 제7조제1항).
- (5)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6) 멸실·훼손된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 원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지역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여 관리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7) 시장은 민간의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 (8)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 (9)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1.

(3)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검토) : 원안 동의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 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 없음.

(4) 기타

- 입법예고('15.2.17 ~ 3.9) : 일부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총괄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셋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넷째, 한양도성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 한양도성 주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정주권 및 주거안정화를 위한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주요 문제점

1) 포괄적인 위임

제정안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와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과 임기, 안전과 회의 운영 등은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됨.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규정은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위임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조직의 설치와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은 당장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가. 국내 세계유산 및 관련 조례 현황

- 국내에서는 현재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10개의 문화유산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등 1개의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잠정목록에는 한양도성을 포함해 강진 도요지,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등 17개가 등재되어 있음.

세계유산 관련 조례는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 6개 광역단체와 강화, 공주, 수원, 신안, 익산, 부여, 통영 등 7개 기초단체가 16개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코모스¹⁾ 한국위원회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2012.8.14 ~ 2013.10.31) 결과보고서에서 세계유산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산의 진정성이 중요한 심사기준이었지만 이후 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정비 및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한국의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계유산 관련 조례 현황 붙임2.)

1) ICOMOS :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협의회. 이코모스는 전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자원하여 구성한 국제 NGO 조직으로, 110개국에 국가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기념물과 유적의 보전과 보호 분야의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임.

나. 법률과 다자조약 간 용어의 통일(제2조, 제7조)

-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과 1988년 12월 20일 체결·비준되어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른 조례안으로

법률과 다자조약 간에 서로 다른 용어를 세계유산협약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제2조와 제7조에서 취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에 따른 조치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다.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제4조)

-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2015.3.6, 시장 방침 제44호)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임.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붙임3.)

- 그러나 자문과 협의·조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와 행정협의회는 차치하더라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안건 등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④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제5조)

-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유산 등재심사 시 상시적인 점검과 보수정비, 유산가치 공유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유무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므로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지실사 전에 현장관리·연구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14년 9월 5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한양도성 현장관리조직 설립의 타당성, 형태,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인 “한양도성 현장관리체계 구축방안” 예산 6천만원 신규증액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다른 지자체의 세계유산 전담조직으로는 경기도의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 등의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이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다만, 남한산성(총 연장 12.356km)이 경기문화재단 산하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2개팀 14명)와 산하 현장조직(2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원 화성(총 연장 5.7km)이 시 직할의 화성사업소(2개과 40명)와 산하 현장조직(22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멸실·훼손구간 5.316km를 포함해 전체 18.627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의 현장관리·연구조직은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양도성 현장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와 재원확보,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제8조)

-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시한번 조례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용어를 구체화하고,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반영하여야 한다”로 다듬을 필요가 있음.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해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 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 8. (생략)

-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은 전체 길이 18.627km의 28.5%에 달하는 5.316km로 이 중 사유지 구간은 4.001km이며, 주요 멸실·훼손 구간은 경신고 ~ 구 시장공관, 장충동 주택가, 흥인지문 ~ 광희문, 남산 순환도로, 힐튼호텔, 승례문 주변 등임.

한양도성 멸실·훼손 구간 현황

전체 길이	원형(복원) 구간	보수복원 구간 (구 시장공관 등)	멸실·훼손 구간	
			도로 구간	사유지 구간
18.627km	13.015km	0.296km	1.315km	4.001km
※ 주요 멸실·훼손 구간 : 경신고 ~ 구 시장공관, 장충동 주택가, 흥인지문 ~ 광희문, 남산 순환도로, 힐튼호텔, 승례문 주변				

바. 민간에 대한 지원(제9조)

- 제정안은 한양도성 및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 한양도성 주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정주권 및 주거안정화를 위한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및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을 말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 2. 하천 / 3. 공공공지 /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 6. 비상대피시설 / 7. 가스공급시설
8. (생략)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제정안 제9조제2항제2호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은 성곽 주변 마을에 소재한 이화장, 삼군부 총무당 등 문화재와 국민주택단지 등 근대건축물과 주거 및 생활양식 등을 말하는 것임.



이화장



삼군부 총무당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수도원



구 서산부인과



국민주택단지



한옥밀집지역

- 제정안 제9조제2항제3호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은 이화마을 박물관, 옛길을 이용한 성곽 가는 길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해 한양도성 관련 교육과 홍보, 인식제고 및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설치하는 앵커시설을 말하는 것임.



이화마을 박물관

- 제정안 제9조제2항제4호 “정주권 및 주거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한양도성 주변의 개발 제한 등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게쉼터, 보안·방범 시설, 공유주택 (두레주택), 주택개량 상담실 등을 말하는 것임.



- 제정안 제9조제2항제5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성곽마을 가치공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말하는 것임.

북정마을 새해맞이 소원빌기 ('15. 1)
연날리기, 소원등달기, 마을잔치, 체험행사



행촌동 정월대보름 마을축제 ('15. 3. 5)
성곽마을 한바퀴, 윷놀이, 민속한마당, 체험행사



- 제정안은 이처럼 한양도성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 주변의 역사와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법」은 민간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 5월 28일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지출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정안 제9조제1항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은 한양도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서울시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관리 단체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5조를 준용하여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정안 제9조제2항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융자는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6개월 후인 12월 5일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한양도성 주변 마을은 대부분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또한 「도시재생법」 제27조는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사. 특별회계 등의 운영(제10조)

- 제정안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양도성 중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12.427km의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존·관리 외에도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6.2km의 멸실·훼손 구간 및 보수·복원 구간의 추가 발굴·복원을 위한 특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별회계는 서울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재정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한양도성 구간별 사유지 현황

문화재구역	사유지	
	면적	비율
28,644㎡	2,584㎡	9.2%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면적	비율
582,208㎡	101,918㎡	17.5%
민간점유 잔존유구(사적 미지정) : 총 568m 송월길(월암근린공원 인근) 80m, 경신고 175m, 혜성교회 60m, 두산빌라 69m, 장충동 주택가 184m		

아. 기타 수정 사항

- 제정안 중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법문 정리, 표현 정비, 용어 통일,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한 조문은 다음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u>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세계유산”</u> 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u>“세계유산협약”</u> 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u>“잠정목록”</u> 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u>“유산구역”</u> 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u>“완충구역”</u> 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뜻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세계유산”</u>이란 ----- ----- (이하 <u>“세계유산협약”</u> 이라 한다) ----- ----- -----. 2. <u>“잠정목록”</u>이란 ----- ----- -----. 3. <u>“유산구역”</u>이란 ----- -----. 4. <u>“완충구역”</u>이란 ----- -----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u>“한양도성”</u> 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이하 <u>“한양도성”</u> 이라 한다) ----- ----- 위하여 -----.</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p> <p>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p>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p> <p>① -----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p> <p style="text-align: c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p>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 ----- -----.</p>
<p>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u>프로그램의 운영</u> 3. <u>그 밖에</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u>프로그램 운영</u> 3. <u>그 밖에</u> -----
<p>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u> 2. <u>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u> 3. <u>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u>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 <u>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u> 3. <u>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4. ----- <u>위하여</u> ----- <p>③ ----- <u>수립하려면</u> ----- ----- ----- . <u>이 경우</u> ----- -----.</p>
<p>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u>통해</u>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u>위해</u>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도시계획</u></p>	<p>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 ----- ----- <u>통하여</u> ----- - <u>위하여</u> -----.</p> <p>② ----- ----- <u>광역시도</u></p>

제 정 안	수 정 의 건
<p>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 ----- <p>③ -----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 --.</p>
<p>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 ----- ----- 운영 -----.</p>
<p>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사무의 위탁) ① -----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p>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1)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

※ 조례안 내용

-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2) 민간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 및 주민활동 지원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 지원·육성
- 한양도성 주변마을 등의 지원 :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 조례안 내용

-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

4. 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 : 연간 15회
- 산출기준 : 위원 참석수당 100천원/1인, 워크숍 5,000천원/1인·1회, 회의자료 2,264천원
- ※ 등재 여부가 3차년도('17년)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 4차년도('18년) 부터 위원회 개최건수를 축소(15회 → 10회)
- 비용추계기간 : 2015년~2019년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 개최횟수 : 연간 본 위원회(15명) 16회, 소위원회(7명) 8회
- 산출기준 : 위원 참석수당 100천원/1인, 조사연구비 220천원×5명×5회, 자료발간 등 9,860천원, 우편 발송비 2,200원×16명×37회
- ※ 2차년도('16년)부터 1차년도('15년) 대비 안전 감소 예상
 - 본 위원회 : 16회('15년) → 13회('16년 이후)
 - 소 위원회 : 8회('15년) → 5회('16년 이후)
- 비용추계기간 : 2015년~2019년

(3) 민간단체 및 주민활동 지원

- 산출기준 : '15년 '한양도성 주변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비 기준 (85,000천원)
- 비용추계기간 : 2015년~2019년

(4) 한양도성 주변마을 등의 지원

- 산출기준 : '15~16년 한양도성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가감 (공감대 형성 250,000천원, 주택개량지원 610천원)
- 비용추계기간 : 2015년~201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운영	126,320	27,264	27,264	27,264	22,264	22,264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185,300	46,260	34,760	34,760	34,760	34,760
	민간단체 주민활동 지원 및	42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한양도성 주변마을 등의 지원	4,900,000	260,000	320,000	1,260,000	1,260,000	1,260,000
	소계(b)	5,636,620	418,524	467,024	1,407,024	1,402,024	1,402,024
□ 총 비용(a-b)		-5,636,620	-418,524	-467,024	-1,407,024	-1,402,024	-1,402,02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5,636,620	418,524	467,024	1,407,024	1,402,024	1,402,02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5,636,620	418,524	467,024	1,407,024	1,402,024	1,402,024

5. 덧붙이는 의견

- 상기 사업 중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운영 이외의 사업은 기 시행 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것이 아님.

6. 작성자 : 한양도성도감 함창모(02-2133-265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3차년도('15년~'17년)	4~5차년도('18년~'19년)
계	126,320	81,792천원(27,264천원×3년)	44,528천원(22,264천원×2년)
위원회 참석수당	65,000	100천원×10명×15회 = 15,000천원	100천원×10명×10회 = 10,000천원
워크숍 및 자료발간 등	61,320	워크숍 5,000천원×2회 + 회의자료 2,264천원 = 12,264천원	워크숍 5,000천원×2회 + 회의자료 2,264천원 = 12,264천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차년도('15년)	2~5차년도('16년~'19년)
계	185,300	46,260천원	34,760천원×4년=139,040천원
위원회 참석수당	102,000	· 본위원회 : 100천원×15명×16회=24,000천원 · 소위원회 : 100천원×7명×8회=5,600천원	· 본위원회 : 100천원×12명×13회=15,600천원 · 소위원회 : 100천원×5명×5회=2,500천원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등	76,800	· 조사연구비 : 11천원×20장×5명×5회= 5,500천원 · 자료발간, 인쇄, 기타 사무용품비 : 9,860천원	· 조사연구비 : 11천원×20장×5명×5회= 5,500천원 · 자료발간, 인쇄, 기타 사무용품비 9,860천원
위원회 자료 발송 등	6,500	· 우편 발송비용 : 2,200원×16명×37회=1,300천원	· 우편 발송비용 : 2,200원×16명×37회=1,300천원

3. 민간단체 및 주민활동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차년도('15년)	2차년도('16년)	3차년도('17년)	4차년도('18년)	5차년도('19년)
합계	42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한양도성 주변 공동체 희망사업	42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4. 한양도성 주변마을 등의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합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합계	4,900,000	260,000	320,000	1,260,000	1,260,000	1,260,000
공감대 형성사업	1,30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주택개량 지원사업	3,600,000	-	6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참고자료 : 2015년 한양도성 보수·정비예산 별첨

< 참고자료 >

2015년 한양도성 보수·정비예산

구 분	사 업 비(천원)
합 계	4,312,000 (국비 1,470,000)
성벽 변형구간 계측관리	324,000 (국비 105,000)
한양도성 탐방로조성 및 정비	700,000 (국비 490,00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500,000 (국비 350,000)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1,122,000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216,000
한양도성 정밀실측	400,000 (국비 280,000)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200,000 (국비 140,000)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	150,000 (국비 105,000)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500,000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200,000

붙임2. 한국의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계유산 관련 조례 현황

한국의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문화(i)(iv), 1995)	종묘(문화(iv), 1995)
해인사 장경판전(문화 (iv)(vi), 1995)	창덕궁(문화(ii)(iii)(iv), 1997)
화성(문화(ii)(iii), 1997)	경주 역사 지구(문화(ii)(iii), 2000)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문화(iii), 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자연(vii)(viii), 2007)
조선왕릉(문화(iii)(iv)(vi), 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문화(iii)(iv), 2010)
남한산성(문화 (ii)(iv), 2014)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강진 도요지(1994.9.1)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1(2010.1.11)
중부내륙 산성군2(2010.1.11)	익산 역사유적지구(2010.1.11)
염전(2010.1.11)	대곡천 암각화군(2010.1.11)
낙안읍성(2011.3.11)	외암마을(2011.3.11)
서원(2011.12.9)	서울 한양도성(2012.11.23)
김해·함안 가야고분군(2013.12.1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2013.12.12)
한국의 전통산사(2013.12.1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1994.9.1)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2002.1.25)	서남해안 갯벌(2010.1.11)
우포늪(2011.1.11)	

세계유산 관련 조례 현황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강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여군)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3.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2015.3.6, 시장 방침 제44호)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 기능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및 홍보,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안 : 총 34명

- 위원장 : 시장, 민간 공동위원장(문화재 분야의 저명인사 위촉)

- 당연직 위원 : 12명

서울시(4) : 시장, 행정1부시장, 총괄건축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자치구(5) : 자치구청장(종로구, 중구, 성북구, 용산구, 서대문구)

관계기관(3) : 문화재청 차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수도권방위사령부 부사령관

- 위촉직 위원 : 22명

민간위원장(1) : 미정

시의회(1) : 서울시의회 의원

유관단체(4)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전)위원장, (전)사무총장

자문위원회(1)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도성마을 대표(7) : 이화동, 충신동, 창신동, 교남동, 삼선동, 성북동, 다산동

시민단체 등(8) : 시민단체 2, 종교계 3, 경제계 1, 언론 2

○ 위원의 임기 :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까지로 하고

등재 이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2014.11.19 구성, 시장 방침)

○ 구성 : 행정1·2부시장(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5명

○ 개편안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국장, 도시안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5명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2012.7.17 최초 구성)

○ 구성 : 문화재 분야 전문가 20명, 서울시의원 1명 등 위촉직 21명,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등 당연직 4명

4. 공청회 요지

-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오후 2시(제261회 임시회 폐회 중)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제 :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 진술인 :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강운 종로구 문화관광국장
송인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장
황인준 한양도성 인근 교남동 마을 대표
(배석) 박경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장

○ 주요 내용

-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훌륭하지만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 서울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한양도성 성곽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양도성이 관광객 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이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함.
-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 주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 한양도성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향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주민과 자치구, 전문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음.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주민과 공존하는 가운데 유산관광의 가치는 제고하면서 상업화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노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수정안의 요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령용어 통일과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73
----------	-----

제안연월일 : 2015년 7월 1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회의 구성 및 안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조례
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법령용어 통일과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회의 운영 등
을 규정함(안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
일시켜 표현을 명확하게 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를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로 하고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세계유산” 이라 함은”을 ““세계유산”이란”으로 하고

“이하 “세계유산협약” 이라 한다”를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잠정목록” 이라 함은”을 ““잠정목록”이란”으로 하고

제3호 중 ““유산구역” 이란”을 ““유산구역”이란”으로 하며

제4호 중 ““완충구역” 이란”을 ““완충구역”이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이하 ‘한양도성’ 이라 한다”를 “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로 하며,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안 제4조의 제목을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각각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프로그램의 운영”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통해”를 “통하여”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를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
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을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으로 하고

안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운영”을 각각 “운용”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u>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세계유산”</u> 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u>“세계유산협약”</u> 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p> <p>2. <u>“잠정목록”</u> 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p> <p>3. <u>“유산구역”</u> 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p> <p>4. <u>“완충구역”</u> 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뜻은 ----- -----.</p> <p>1. <u>“세계유산”</u>이란 ----- ----- (이하 <u>“세계유산협약”</u> 이라 한다) ----- ----- -----.</p> <p>2. <u>“잠정목록”</u>이란 ----- ----- ----- -----.</p> <p>3. <u>“유산구역”</u>이란 ----- -----.</p> <p>4. <u>“완충구역”</u>이란 ----- ----- -----.</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u>‘한양도성’</u> 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이하 <u>“한양도성”</u> 이라 한다) ----- ----- 위하여 -----.</p>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p> <p>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u>등재 추진과 보존·관리에</u>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u>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p> <p>① ----- <u>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u>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 ----- <u>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u>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신설>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p> <p><신설>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신설>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p> <p><신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신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신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p> <p>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p> <p>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p> <p>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p> <p>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p> <p>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p> <p>④ (제정안과 같음)</p> <p>⑤ (제정안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u>프로그램의 운영</u> 3. <u>그 밖에</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u>프로그램 운영</u> 3. <u>그 밖에</u> -----
<p>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u> 2. <u>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u> 3. <u>한양도성의 국내외 교류</u>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 <u>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u> 3. <u>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4. ----- <u>위하여</u> ----- <p>③ ----- <u>수립하려면</u> ----- ----- . <u>이 경우</u> ----- -----.</p>
<p>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u>통해</u>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u>위해</u>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 ----- ----- <u>통하여</u> ----- - <u>위하여</u> -----.</p> <p>② ----- ----- <u>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u> 2. <u>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u> 3. <u>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u> 4. <u>해당 지역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u> 5. <u>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u>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② ----- -----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u> 2. <u>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u> 3. <u>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u> 4. <u>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u> 5. <u>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u> 6. ----- ----- <p>③ -----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 --.</p>
<p>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영)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용) ----- ----- ----- 운용 -----.</p>
<p>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사무의 위탁) ① -----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p>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3. “유산구역”이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점유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란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유산 및 유산 주변의 자연환경 및 문화적 경관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한양도성(이하 “한양도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행정1부시장 및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양도성 주변 자치구청장, 문화재청·서울특별시교육청·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대표와 시장이 지명하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장
 3.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단
 4. 세계유산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한양도성 주변 마을 대표,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경제계, 언론 등 각계 대표
- ④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⑤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한양도성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한양도성 행정협의회를 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현장관리·연구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현장관리·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현장관리·연구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양도성의 일상적 보수·점검, 안전관리 및 보존·복원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한양도성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6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한양도성 주변 마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둔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멸실·훼손 구간 등의 관리)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 발굴, 복원 등을 통하여 한양도성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멸실·훼손된 한양도성 주변지역의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문화, 마을, 경관 등의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문화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3. 마을의 정체성 강화 및 활력 부여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민의 정주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6. 기타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등의 운용)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